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856
----------	-------

발의연월일 : 2026. 7. 9.

발 의 자 : 서영교 · 박지원 · 박균택
이성윤 · 민병덕 · 장경태
김동아 · 김남희 · 양부남
박홍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사하여 공직사회의 책임성과 청렴성을 확보하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감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적법절차의 준수가 중요한 기관임.

그러나 최근 감사 과정에서 반복적·장시간 문답조사, 심야 조사, 광범위한 디지털 포렌식 실시 등으로 조사대상자의 기본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감사 결과의 작성 및 수사요청 과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에 대한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 「감사원법」은 감사위원회의 의결 범위, 감찰관의 독립성, 문답조사 시 변호인 참여, 디지털 저장매체 포렌식의 범위와 절차, 중요 정책결정에 대한 감사의 한계 및 심사청구인의 권리구제 등에 관한 규정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감사원의 권한 행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절차적 권리 보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사위원회의 의결 권한을 확대하여 감사원의 합의제 운영 원칙을 강화하고, 검찰관의 독립성을 제고하며 문답조사 시 변호인 참여권 보장 및 디지털 포렌식의 원칙 및 한계를 법률에 규정하는 등 감사절차 전반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2조제1항, 제24조의2 및 제27조 등).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35조에 따른 수사기관에 대한 고발

제2장제3절에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감찰관) ① 감사원에 감찰관 1명을 둔다.

② 감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1. 판사·검사·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었던 사람
2. 감사·회계·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있었던 사람
3. 그 밖에 공직 감찰 업무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감찰관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 운영하며 감사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를 우선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찰관으로 임명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의 당원이거나 임명일 전 1년 이내에 당원이었던 사람
 3.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 있거나 임명일 전 1년 이내에 그 공직에 있었던 사람
 4. 임명일 전 1년 이내에 감사원 소속 공무원이었던 사람
- ⑤ 감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1. 감사원 소속 직원의 비위 조사 및 감찰
 2. 감사원 소속 직원의 인사사무에 대한 감사
 3. 그 밖에 감사원 내부 청렴도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⑥ 감찰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 ⑦ 감찰관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감사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인력 등 행정적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⑧ 감찰관은 감찰을 개시하거나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과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⑨ 감찰관은 감찰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한 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⑩ 감찰관은 감찰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⑪ 감찰관이 궐위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⑫ 감찰관의 임명 절차, 보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감사원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다른 방법으로는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을 수 없는 때에 한하여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감사사항과 관련된 범위에서 선별하여 추출하는 방법으로 제출받을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선별하여 추출하는 방법으로 제출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추출 범위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2. 자료의 추출 과정에 자료 제출 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추출된 자료의 목록을 작성하여 자료 제출 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4. 감사 목적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자료는 지체 없이 삭제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변호인 참여권) ① 감사원은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계자 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된 자(이하 이 조에서 “관계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문답서를 작성할 때에는 관계자 등이 신

청하는 경우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관계자 등은 변호인의 참여를 원하는 경우 문답 시작 전까지 변호인 참여 신청서와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참여 없이 문답서를 작성할 수 있다.

1. 문답서를 작성할 내용에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침해하거나 감사목적 달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변호인의 참여 신청이 문답의 개시 및 진행을 지연하거나 방해하기 위한 경우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답서 작성 중이라도 변호인의 참여를 중단하게 할 수 있다.

1. 변호인이 감사자의 승인 없이 관계자 등을 대신하여 진술하는 등 문답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답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2. 그 밖에 문답서 작성의 정당한 진행을 현저히 어렵게 하는 경우

⑤ 감사원은 동일한 관계자 등에 대하여 같은 감사사항에 관한 문답조사를 반복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횟수 및 시간을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심야(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에는 관계자 등의 동의를 없는 한 문답조사를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변호인 참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제46조제3항 중 “3개월”을 “90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감사원이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심사청구인은 결정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원처분청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감사위원회의에서 결정한다.</p> <p>1. ~ 7. (생략)</p> <p><u><신설></u></p> <p>8. ~ 16. (생략)</p> <p>② (생략)</p> <p><u><신설></u></p>	<p>제12조(의결사항) ① ----- ----- -----.</p> <p>1. ~ 7. (현행과 같음)</p> <p><u>7의2. 제35조에 따른 수사기관에 대한 고발</u></p> <p>8. ~ 16.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u>제24조의2(감찰관) ① 감사원에 감찰관 1명을 둔다.</u></p> <p><u>② 감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u></p> <p><u>1. 판사·검사·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었던 사람</u></p> <p><u>2. 감사·회계·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있었던 사람</u></p> <p><u>3. 그 밖에 공직 감찰 업무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u></p> <p><u>③ 감찰관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 운영하며 감사원 소속 공무원</u></p>

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를 우선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찰관으로 임명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의 당원이거나 임명일 전 1년 이내에 당원이었던 사람

3.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 있거나 임명일 전 1년 이내에 그 공직에 있었던 사람

4. 임명일 전 1년 이내에 감사원 소속 공무원이었던 사람

⑤ 감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1. 감사원 소속 직원의 비위 조사 및 감찰

2. 감사원 소속 직원의 인사사무에 대한 감사

3. 그 밖에 감사원 내부 청렴도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⑥ 감찰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⑦ 감찰관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감사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인력 등 행정적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감찰관은 감찰을 개시하거나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과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⑨ 감찰관은 감찰 결과를 감사위원회의에 보고한 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감찰관은 감찰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감사위원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⑪ 감찰관이 궐위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⑫ 감찰관의 임명 절차, 보수,

제27조(출석답변·자료제출·봉인 등) ① ~ ⑤ (생략)
<신 설>

<신 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출석답변·자료제출·봉인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감사원은 제1항제2호에 따
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
우로서 다른 방법으로는 감사
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을 수
없는 때에 한하여 디지털 저장
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감사사
항과 관련된 범위에서 선별하
여 추출하는 방법으로 제출받
을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디지털 저장
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선별하
여 추출하는 방법으로 제출받
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추출 범위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2. 자료의 추출 과정에 자료 제
출 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
다.
3. 추출된 자료의 목록을 작성
하여 자료 제출 의무자에게

<신 설>

교부하여야 한다.

4. 감사 목적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자료는 지체 없이 삭제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제27조의2(변호인 참여권) ① 감사원은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계자 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된 자(이하 이 조에서 “관계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문답서를 작성할 때에는 관계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관계자 등은 변호인의 참여를 원하는 경우 문답 시작 전까지 변호인 참여 신청서와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참여 없이 문답서를 작성할 수 있다.

1. 문답서를 작성할 내용에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침해하거

나 감사목적 달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변호인의 참여 신청이 문답의 개시 및 진행을 지연하거나 방해하기 위한 경우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답서 작성 중이라도 변호인의 참여를 중단하게 할 수 있다.

1. 변호인이 감사자의 승인 없이 관계자 등을 대신하여 진술하는 등 문답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답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2. 그 밖에 문답서 작성의 정당한 진행을 현저히 어렵게 하는 경우

⑤ 감사원은 동일한 관계자 등에 대하여 같은 감사사항에 관한 문답조사를 반복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횟수 및 시간을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심야(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에는 관계자 등의

제46조(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①

·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④ (생략)

동의를 없는 한 문답조사를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변호인 참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제46조(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90일-----

-----. 이 경우 감사원이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심사청구인은 결정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원처분청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